

海洋環境管理制度에 관한 立法論的 研究

이영호

해양경비안전교육원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

A study on the Legislation of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System

Young Ho Lee

Korea Coast Guard Academy and Korea Coast Guard Research Center

핵심용어 :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 입법

1. 개요 및 연구목적

세계는 지금 해양환경에 대한 개념이 변화되고 있으며, 21세기는 우리 인류에게 생명이 살아 숨쉬는 깨끗한 해양을 열어가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해양환경이라 하면 오염방지, 폐기물 투기 방지 등 오염원의 방지를 통하여 해양수질의 악화를 방지하고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해양환경형법이 인간과 해양의 이용관계만으로 그 보호대상을 확정할 것이 아니라 해양환경 그 자체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환경 그 자체의 생명을 보호법익으로 수용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즉 해양환경의 파괴는 해양생태계의 파괴이고, 이는 인간생명의 파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해양환경 그 자체를 보호대상으로 하는 가치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해양환경관리의 현황, 해양환경관리제도, 주요 해양국의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입법태도 등을 통해 해양환경관리제도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론

해양환경관리법은 선박 및 해양시설으로부터의 오염 규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日本 海洋汚染および海上災害の防止に關する法律은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뿐만 아니라 항공기로 부터의 해양오염 등에 대한 해양오염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규제대상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고의성 판정이 모호한 오염방기관리인 미입명, 및 선박오염물질기록부 선내 미비치 등 즉시 단속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경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각종 면세유류를 공급받는 선박과 당해 선박의 폐유를 반납 받은 사업자간 선박폐유처리료를 입력 시스템구축이 미흡한 현실이다.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은 폐유저장용기 비치의무가 없어 해양오염의 사각지대가 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 우려가 있다. 폐유에 대

한 용어의 정의에 대해 폐유라는 같은 물질을 두고 해양환경관리법과 폐기물관리법이 폐유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어 법 집행의 일관성 유지 미흡으로 각종 민원유발이 우려된다. 해양환경관리법에는 폐유를 기름으로 정의하고 있고 폐기물관리법은 폐유를 폐기물로 정의하고 있어 향후 통일된 용어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폐기물의 고의적 해양유출로 인해 해양오염, 선박엔진고장 등으로 인한 선박항행저하 등을 초래하고 있으나 폐기물의 해양유출 시 기름유출 시와 그 벌칙을 달리하고 있다. 기름 고의유출 시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폐기물의 경우는 최고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벌칙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3. 결론

해양환경관리제도의 입법론적 보완점과 대안으로 첫째, 유엔해양법협약 등 일반 국제관행 등과 같이 선박으로부터의 오염 뿐만 아니라 육상기인 오염, 심해저활동기인 오염 및 항공기로 부터의 해양오염 등에 대한 해양오염의 모든 유형을 포괄하는 규제대상영역을 확대. 둘째, 효율적 규제를 위한 형벌 및 과태료부과제도의 개선으로서, 고의성이 모호하고 즉시 단속의 효율성을 요구하는 경범죄행위는 범칙금 제도를 활용하는 등 입법의 정비가 필요하며, 셋째, 가칭 “노 웨스트오일 노 폴오일 시스템(No Waste oil No Fuel oil System) 도입으로 선박발생 폐유 처리실적을 관리하도록 개선. 넷째, 폐유저장용기 비치기준 선박의 범위를 총톤수 2톤 이상의 선박으로 확대. 다섯째, 폐기물의 고의적 해양유출 시에도 기름의 해양유출시 벌칙과 같이 최고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 여섯째 폐유에 대하여 타법과 통일된 용어의 정의를 유지하므로써 이로인한 민원을 사전 차단하는 등 해양환경의 효율적 규제를 위한 입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 First & Corresponding Author : ileeyho@korea.kr, 041-640-2010